학사경고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22. 03. 01.
□ 개정 : 2023. 06. 0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학칙 제 30조(경고) 및 학칙 시행세칙 49조(학사경고)에 의거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학칙 시행세칙 49조(학사경고)에 의해 매 학기 성적의 평균 평점이 1.5미만(치위생과, 임상병리과 1.8미만, 간호학과 2.0미만)인 자(이하 "학사경고자")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학사경고자는 아니지만 평균 평점 2.0 미만의 학사경고 위기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역할) ① 교학처 학적팀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사경고자 명부 작성
2. 학사경고자 및 보호자, 지도교수에 대한 통보
3. 학사경고자 지도교수 상담 결과 관리
4. 학사경고자 관리결과 분석 및 환류

②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사경고자 지도 및 상담 실시
2.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

③ 진로·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위한 진로·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④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제4조(학사경고자 지도 및 관리) ① 교학처 학적팀에서는 성적 확정 후 1주일 이내에 학사경고자에게 학사경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통보하고, 각 학과에게는 학사경고자 명단을 통보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중도탈락 방지, 학업지속, 대학생활 적응, 학사관리, 성적향상 등의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,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해 제출한다.

③ 교학처 학적팀에서는 신학기 등록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명단을 각 학과와 관련부서에게 통보한다.

④ 지도교수는 최종 수강신청 정정 마감일까지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수강신청 지도, 지원 프로그램 안내, 대학생활 적응, 학사관리, 성적향상 등의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,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해 제출한다.

⑤ 지도교수는 상담 후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를 진로·심리상담센터에 의뢰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

수 있도록 조치한다.

⑥ 진로·심리상담센터에서는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실시하고, 심리평가 결과를 통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.

1. 심리평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, 진로·심리상담센터에서는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⑦ 심리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경우,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⑧ 학사경고자는 아니지만, 평균 평점 2.0 미만의 학사경고 위기자에 대해서도 지도교수는 ④~⑦항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.

제5조(모니터링 및 환류) ① 교학처 학적팀에서는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한 성적향상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결과와 개선계획을 교무위원회 보고한다.

② 교무위원회는 학사경고자 관리결과와 개선계획에 대해 심의하여 학사경고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제6조(세부사항) 학사경고자 등에 관한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